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계 오류에 대한 수정 및 공표 의무 신설〉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21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계 오류에 대한 수정 공표 의무 신설 (안 제27조제6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변재일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3. 9. 26.

다. 회 부 일 : 2023.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통계오류에 대한 수정 공표 의무 신설(안 제27조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안 제27조제6항)</u>
○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 공표 시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	○ 제27조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 공표 시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

현행법은 공표된 통계에 대하여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오류에 대한 수정 및 이에 대한 공표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벌칙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류의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¹⁾. 개정안은 통계 오류가 발견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정 공표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1) 「통계법」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 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오류가 발생한 통계에 대하여 수정하여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가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계속해서 활용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오류 통계의 발견 즉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통계의 확대·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욱이 통계는 모든 국민들이 활용하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중요하고 잘못된 통계 유통은 통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겠음.

현재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서 공표 중이나, 개정안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의 수정·공표 의무를 분명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류를 지체없이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정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실익 또한 인정된다고 보임.

[최근 3년 간 통계청 통계 오류 및 수정 현황]

연도	오류 건수	수정 건수	비고
2020	0	0	KOSIS*
2021	1	1	KOSIS
2022	3	3	KOSIS

출처: 통계청

* 현재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수정된 통계를 공표 중

한편,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공표 시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계를 수정하여 공표할 경우에도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통계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통계의 활용 및 통계 정책 마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이며 향후 수정된 통계에 대한 공표가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u>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⑦ -----</u> <u>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u> ----- ----- -----.

문의처

02)6788-5150